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일자 2010. 11. 3.

총 1면

www.nec.go.kr

☎ 82-2-503-0648

FAX 82-2-504-5350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공천현금, 당비대납, 단체자금 기부 등 금지 -

-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나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정치자금은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 31 조) 또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나 입당 등 조건을 전제로 하여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제 32 조)

[정치자금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

법인자금으로 당비 납부

- 당해 법인의 구성원을 특정 정당에 입당시킨 후 법인 자금으로 거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단체 활동비로 후원금 납부

- 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활동비·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

개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 기부

-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가 아닌 개인·법인·단체가 재외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회사 임원의 정치자금 기부 알선

- 회사의 임원이 직원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천현금 수수

- 정당공천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

당비대납 행위

-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받고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